

---

「코로나19(COVID-19)」 관련

#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(4판)

---

2021. 6. 10.



고용노동부

산재예방보상정책국  
산업보건과

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니 귀 사업장 사정에 적합하게 적용  
하시기 바랍니다.

#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(4판)

## I. 교육지침 개정사항

구 분	현 행(3판)	개 정(4판)	비고(사유 등)
직무교육	<p><b>【이수기간 유예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</li> <li>-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</li> </ul>	<p><b>【이수기간 유예 종료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,</li> <li>-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</li> <li>* 2단계까지 100미만, 2.5 단계 이상 50인 미만</li> </ul>	
근로자 정기교육	<p><b>【소규모 교육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 교육 보다는</li> <li>- 가급적 '소규모 단위' 교육을 권장</li> <li>○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,</li> <li>-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</li> </ul>	<p><b>【교육 실시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</li> <li>* 2단계까지 100미만, 2.5 단계 이상 50인 미만</li> <li>○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</li> <li>-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</li> </ul>	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
관리감독자 교육	<p><b>【집체·현장 유예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리감독자 정기교육(인터넷 원격교육) 시</li> <li>-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</li> </ul>	<p><b>【교육실시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</li> <li>* 2단계까지 100미만, 2.5 단계 이상 50인 미만</li> </ul>	

## Ⅱ. 교육지침 전문

❖ 코로나19 교육지침(3판)을 토대로 적용하되, 직무·정기교육 및 이에 따른 방역 수칙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

### 1 안전보건교육 관련

#### □ 직무교육

- (유예종료)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
  - 다만, 코로나19 교육지침(3판)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
- (일정변경) 직무교육기관은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既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,
  -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

#### □ 정기교육

- (근로자)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\*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
  - \*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
  -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\*을 실시하되,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
    - \*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
- (관리감독자)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
  - 다만, 코로나19 교육지침(3판)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·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

## 2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

### □ 공통사항

- 코로나19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\*은 반드시 준수
  - \* 발열(37.5℃이상) 확인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
  -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 보다 강화하여 집체교육\*은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실시, 조치기준이 2.5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실시
    - \* 1단계 및 1.5단계, 2단계인 경우 100인 미만, 2.5단계 이상 50인 미만
- 교육시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,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\* 안내
  - \*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, 벌금 부과 가능
  -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
  - 자율점검표\*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,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
  - \* [붙임1]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

### □ 사업장·안전보건교육기관

- 집체교육으로 교육시 교육장 내 근로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교육 실시
  - 거리두기로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추가로 마련하여 실시
  -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,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안내한 후 사업주는 준수여부를 시간대별 확인

### 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- (교육생 관리)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및 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하고, 능동감시·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
  - 의사환자\* 및 유증상자\*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·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, 검진받은 1일은 교육수강으로 인정
  - \* 의사환자: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 - 유증상자: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

- (유예내용) 「감염병 재난」 시점부터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(지방관서) 유예
- (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으로 인한 직무 교육 취소·연기 등으로 기관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
- (교육생 출결 관리) 확진환자\*, 의사환자,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(감염병의심자)\*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기간 등에 대해 출석(교육 수강)으로 인정
  - \* 확진환자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
  - 감염병의심자: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
- (위생조치)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작 전에 손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(붙임2 참조)

### Ⅲ.. 행정사항

- (시행시기) '21.06.10 ~ 별도 지침 시달 시 까지



## □ 일반국민 행동수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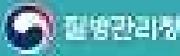
질병관리청 2020.11.19

# 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

인플루엔자 예방

- ①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**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**  
\*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, 시위장, 의료기관약국,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**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**
- ② 흐르는 물에 **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**
- ③ 환기가 안되고 **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**
- ④ 사람과 사람 사이, **두 팔 간격 2m(최소 1m) 거리두기**
- ⑤ 씻지 않은 손으로 **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**
- ⑥ **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**
- ⑦ 매일 주기적으로 **환기**하고 자주 만지는 **표면은 청소·소독하기**
- ⑧ **발열, 호흡기 증상**(기침이나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사람과 **접촉 피하기**
- ⑨ 매일 본인의 **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하기**  
\*다양한 주요 증상: 발열(37.5°C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 증상(오심·구토·설사 등)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 등
- ⑩ **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**

□ 마스크 착용(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)


2021.4.28

# 마스크 착용!

##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



※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 
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
### “ 마스크, 반드시 착용하세요! ”

**실내**

- 상시 마스크 착용

**실외**

-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-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

## 마스크,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!

올바른  
마스크 착용법

- ✓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
  - 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피해용으로 간주

착용 가능한  
마스크의 종류

- ✓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 및 수술용 마스크
- ✓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  - ※ 앞사람마스크, 발코니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# 코로나19·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## 일반수칙

-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꼭 필요한 경우(병원 방문 등)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

## 가정 내 주의사항

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(2m)를 지키기  
\* 특히 고위험군(영유아·고령자·만성질환자 등)과 접촉 피하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·식기류·휴대전화 등)은 따로 사용하기
-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·소독하기

##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
-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
-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,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##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

-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
-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,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, 등교, 출근하기
-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